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1)			(별표1)		
단위 : 원			단위 : 원		
도출구분	기 준	수 수 료 액	도출구분	기 준	수 수 료 액
소 말	1두당	24,000	소	1두당	26,400
돼 지	"	4,900	돼 지	"	5,390
양(업소)	"	4,900	양(업소)	"	(현행과 같음)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0
의 건 년 월 일	93. 12. 24 (제25회)

제출년월일 : 1993. 12. .

제 출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제안이유

상수도 수질 향상과 수질화인에 칠지를 기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생산을 위하여 감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코자함.

☐ 주요골자

- 위원회의 목적 강화(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의 세분화(안 제2조)
- 위원구성에 보건의료인 확대(안 제3조)
- 회의 요구요건의 완화(안 제6조)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향상방안 등에 대한 부천시장”을 “향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부천시장”으로 하고 “응하게 하기 위하여”를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조(기능)중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대하여 협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의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시민이 요청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3항 중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의료인

2.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위촉) 제2항 중 “후임자를 선정 위촉”을 “후임자를 위촉”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2항 중 “제적위원 과반수”를 “제적위원 1/3”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부천시 상수도의 수질화인, <u>향상</u> <u>방안등에 대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u> <u>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u> 부천 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u>향상방안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부천시장</u> <u>응하기 위하여</u>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u>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u>	제2조(기능) <u>대하여 협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u> <u>제안한다.</u>		

현행	개정
1. (생략) 2. (생략) 3. 기나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u>시장이</u> <u>요청하는 사항</u> 제3조(구성) ①(생략) ②(생략) ③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u>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u> <u>다.</u> 1. <u>시 민</u> 2. <u>업론인</u> 3. (생략) 4. (생략) ④(생략) 제4조(생략) 제5조(위원회 해촉) ①(생략)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u>후임자를 선정 위촉할수 있으며</u>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 다. 제6조(회의) ①(생략)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u>과반수의</u>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④(생략) 제7조(생략) 제8조(생략) 제9조(생략) 제10조(생략) 제11조(생략)	1.(현행과 같음) 2.(") 3.<u>시장, 의회</u> <u>관련단체나 시민이 요청하는 사항</u>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u>자 중에서 각계의</u> <u>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u> 1. <u>보건의료인</u> 2. <u>시의원, 관계공무원</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 <u>후임자를 위촉</u> 제6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u>1/3</u>..... ③,④(현행과 같음)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